공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_	
람	



제 1316 호 2021. 11. 11.(목)

고 시	. 2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412호[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416호[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417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423호[울산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관한 조례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430호[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430호[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431호[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입법예고]… 	·· 4 14 37 53 62 77	
인 국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253호

「장등지구」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장등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사업명칭 : 장등지구 지적재조사사업
- 2.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3.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270-7번지 일원
- 4. 사업완료 필지수 및 면적 : 173필지, 83,381.0 m²
- 5. 지적확정조서 : 붙임참조
- 6.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052-241-7282)

붙임: 지적확정조서 1부. 끝.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254호

하천점용 허가(협의) 고시

「하천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협의)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명	울산광역시장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점용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1215-6번지	하천의 명칭	○ 상안천
점용 내용	○ 지반 시추조사	점용 면적	○ 일시: 24. 0㎡
점용 기간	○ 일시: 2021. 11. 10. ~ 2021. 12. 3	1.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255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상방5길 32	연암동 478-2	2021. 11. 11.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3)**에 문의 또는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 **11**. **1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412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보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개정·시행(2022. 1. 13.)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과의 상호협의에 의한 공무원 후생 복지제도의 통합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적용범위 및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안 제3조, 제4조)
- 다. 후생복지시설 설치·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안 제5조, 제6조)
- 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안 제7조 ~ 제15조)
- 마.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6조 ~ 제18조)
- 바. 지방의회와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안 제20조)
- 3.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제77조
- **4. 입법문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라. 제 출 처
 - 1)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총무과
 - 2) 전화번호 : 052)241-7321, 팩스번호 : 052)241-7209
 - 3) 전자우편(E-mail) : ondine@korea.kr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보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소속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북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4. "기본항목"이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 5. "자율항목"이란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체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 6. "복지점수(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포인트) 1점은 현금 1천원의 맞춤형 복지비와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 7. "기본복지점수"란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 8.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 9. "월할 계산"이란 해당연도의 복지점수를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신규채용, 전출·전입, 휴직, 복직, 퇴직(면직, 해임, 파면을 포함한다) 등

의 경우 복지점수 부여사유가 있는 월을 실제 근무한 월로 계산한다. 다만, 퇴직일이 1일인 경우에는 해당 월을 실제 근무한 월로 계산하지 아니하며, 동일한 월에 면직된 후 재임용된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1. 휴직 중인 공무원. 다만, 육아휴직·질병휴직·가사휴직·노동조합전임휴 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 2. 국외 파견중인 공무워
 - 3. 직위해제 · 정직 중인 공무원. 다만, 그 처분기간에 한한다.
 - 4. 구청장이 울산광역시 북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 또는 배제하기로 정한 사람
 - ③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 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구내식당, 휴게시설, 자동판매기 등 편의시설
 - 2. 체력단련실 등 건강증진시설
 - 3.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 4. 직장 보육시설(어린이집)
 - 5. 그 밖에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 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 3. 모범·친절·적극행정 등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국내외 시찰
- 4. 생일·결혼·자녀 출산에 대한 격려금품 및 임신직원 편의용품 지급
- 5. 공무원 및 가족의 현장체험프로그램 지원
- 6. 건강검진비(심리상담·치료비를 포함한다) 및 직원 단체보험 지원
- 7.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 제7조(적용기간)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 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 제9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보험료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지정한 기간에 공무원이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처리할 수 있다.
 - ④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복지점수가 소진된다.
- 제10조(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 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항목은 제외한다.
 - 1.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지출항목(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 2.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및 물품 구매항목(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 3.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관련 의료행위항목(성형 등)

- 4.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항목
- 5. 그 밖에 증빙이 불가능한 지출항목
-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복지점수의 일부를 전통시장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 지점수의 합으로 하며, 변동복지점수는 근속복지점수와 가족복지점수로 구성 한다.
 - ② 기본복지점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부여하되,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 ③ 변동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 1. 근속복지점수: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일정점수를 배정한다.
 - 2. 가족복지점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부양가족에 대하여 일정점수를 배정한다.
 - ④ 제3항제1호의 근속기간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 근무연수 계산방식에 따른다.
 - ⑤ 제3항제2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 지급범위에 따른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복지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공무원에게만부여한다.
 - ⑥ 개인별 복지점수 산정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로 하며, 적용기간 중 변동 복지점수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 ⑦ 복지점수의 세부지급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 제12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관리한다.
 - ② 복지점수는 해당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고, 전입으로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한다.

- ④ 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정직·휴직·파견·전출·퇴직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일로부터 정지되며, 그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한다.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1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복지점수 계산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 ⑥ 신분변동일 기준 미사용 복지점수는 소진시키고, 과사용 복지점수는 정산하여 환수한다.
- 제13조(비용지급 및 회계처리)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있다.
 - ② 공무원이 사용한 복지점수의 비용지급은 맞춤형 복지관리 시스템의 처리 방식에 따라 복지서비스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신용카드사에 입금 조치한다.
 - ③ 맞춤형 복지관리 시스템을 통해 처리 불가능한 방법으로 복지점수를 사용한 경우 맞춤형 복지관리 시스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급신청하고, 그비용을 개인계좌로 지급한다.
 - ④ 구청장은 매월 단위로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복지점수 비용지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수익은 공무원의 후생복지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4조(전산관리시스템) ① 복지점수의 관리·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할수 있다.
 -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 개발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그 밖의 운영사항) 그 밖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제도운영 및 유지관리

- 제16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 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 3.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따른다.
 -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직렬 · 직급별 대표성을 가진 소속 공무원
 - 2.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 3.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원 후생복지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 제19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

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맞춤형 복지제도·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 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후생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 전 시행 중인 후생복지제도와 관련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21. 10. 8.>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21. 10. 8.>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21. 10. 8.>
-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 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5. 5. 18.>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416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미디어정보담당관 및 사업소 신설에 따른 부서장 및 관장 직급 규정 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

2. 주요내용

- 가. 기구 개편 사항 반영
 - 1) 미디어정보담당관 직급 규정 및 기획조정실 배치(안 제3조)
 - 2) 주민소통담당관 실·국 조정 반영(안 제4조)가) 기획조정실 주민소통담당관 → 행정지원국 주민소통과
 - 3) 안전정보과 부서 명칭 변경 반영(안 제6조)가) 안전정보과 → 안전총괄과
 - 4) 신설 사업소(구립도서관) 관장 직급 규정(안 제9조)
- 나. 분장사무 조정(별표)
 - 1) 구 본청 부서별 사무분장표(안 별표1)
 - 가) 기획예산담당관 : 홍보 및 소셜미디어 관련 사무 삭제
 - 나) 주민소통담당관 : 삭제
 - 다) 미디어정보담당관 : 신설
 - 기획예산담당관 홍보 및 소셜미디어 관련 사무 이관·신설

- 안전정보과 정보관리, 정보통신 관련 사무 이관·신설
- 라) 주민소통과 : 주민소통담당관 사무 이관·신설
- 마) 도서관과 : 삭제
- 바) 안전정보과
 - 부서 명칭 변경 반영 : 안전정보과 → 안전총괄과
 - 정보관리 및 정보통신 관련 사무 삭제
 - 중대재해처벌법 총괄에 관한 사무 신설
- 2) 사업소별 사무분장표 신설(안 별표2)
 - 가) 문화예술회관 : 제9조제3항 문화예술회관 분장사무 이관·신설
 - 나) 구립도서관 : 도서관과 사무 이관·신설

3. 관계법령

- 가.「지방자치법」제112조
-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14조
- 다.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
- 4. 개정규칙안 및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기획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라. 제 출 처
 -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
 - 2) 전화번호 : 052)241-7102, 팩스번호 : 052)241-7109
 - 3) 전자우편(E-mail) : ginger@korea.kr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민소통담당관"을 "미디어정보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 중 "총무과장"을 "총무과장·주민소통과장"으로, "관광진흥과장·도서관과 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안전정보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7조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문화예술회관"을 "사업소"로 한다.

- 제9조제1항 중 "문화예술회관장"을 "문화예술회관장·구립도서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각 사업소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1(종전의 별표)의 제목 중 "구 본청 실·과 사무분 장표"를 "구 본청 부서별 사무분장표"로, 같은 별표 기획예산담당관 분장사 무란 중 제34호부터 제42호까지, 제76호 및 제7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별표 기획예산담당관란 다음의 주민소통담당관란을 삭제하고, 같은 별표 기획예산담당관란 다음에 미디어정보담당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미디어정보담당관

- 1. 홍보 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2. 주요 역점시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 3. 구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사항
- 4. 인터넷 신문(북구 전자신문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5. 객원기자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6. 소셜미디어(SNS)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7. 구정 홍보시설물(구정게시판,구 청사 홍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
- 8. 구정 현황소개(동영상·화보 제작)에 관한 사항
- 9. 고시, 공고 등 공보게재에 관한 사항
- 10. 잡지 등 정기간행물 등록 · 신고에 관한 사항
- 11. 구 상징물 관리(캐릭터 활성화 사업 포함)에 관한 사항
- 12. 행정 정보화사업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 13. 지역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14. 정보화 대상 업무 발굴 및 전산 개발에 관한 사항
- 15. 정보화사업 협의 조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 16.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17.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18. 온나라시스템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19. 홈페이지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 20. 행정정보시스템 도입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21. 전산실 및 전산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 22.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S/W 보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23. 전산보안장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24. 방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25. 구내 정보통신망(LAN, WAN)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26. 통신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7. 팩시밀리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28. 행정통신시설 운영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29. 통신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 30. 각종 통신회선(행정통신·전화회선 등)의 통합 관리에 관한 사항
- 31. 구 본청 및 산하기관의 통신개발 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 32.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에 관한 사항
- 33.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 34. 공공시설 통신분야 공사감독

별표 1(종전의 별표)의 총무과란 다음에 주민소통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민소통과

- 1. 집단민원 해소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 2. 진정 건의 고충 민원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3. 인터넷 민원접수 처리(국민신문고, 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포함)
- 4.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
- 5.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사항
- 6.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 7. 구청장 동 방문 및 간담회 개최에 관한 사항
- 8. 명절 연휴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 9.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관한 사항
- 10. 친절배가 운동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 11. 기관단체협의회에 관한 사항
- 12. 주민 조례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 13.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 및 피해신고서 접수와 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 14. 민주화 운동 관련자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 15. 6.25전쟁 납북피해신고에 관한 사항
- 16. 행정사 업무에 관한 사항
- 17.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 18. 동 행정복지센터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 19. 통ㆍ반 조직운영 및 민간인 표창에 관한 사항
- 20. 동 예산 운영 및 동 행정 업무 종합조정(동시달 문서통제 등)에 관한 사항
- 21. 적십자 회비 모금에 관한 사항
- 22.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 23. 주민만남의 날 행사운영에 관한 사항
- 24. 주민참여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 25. 주민참여리더 발굴. 육성. 교육에 관한 사항
- 26.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27. 주민자치위원회 운영ㆍ지도에 관한 사항
- 28.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해당 동행정복지센터)
- 29. 각종 여론 및 동향 관리
- 30. 시민단체 신설,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 31.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 32. 바르게살기운동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 33.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에 관한 사항
- 34. 한국자유총연맹에 관한 사항
- 35.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사항
- 36. 타 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 37. 북한 이탈주민 보호 · 관리에 관한 사항
- 38. 생활민원 처리(「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관련 업무)
- 39. 생활불편 스마트신고 민원에 관한 사항
- 40.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41. 감사 및 그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 42. 비위공무원 징계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 43. 청원 진정서 처리에 관한 사항
- 44. 민원서류 처리 점검에 관한 사항
- 45. 감사사항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 46. 공직기강 쇄신 추진에 관한 사항
- 47.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 48. 클린신고센터 운영
- 49.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 50.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 51. 중요정보 및 민원사항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 52. 상급기관 이첩사항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 53.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의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 54. 주민자치회 운영ㆍ지도에 관한 사항
- 55.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 56. 자치분권에 관한 사항

별표 1(종전의 별표)의 도서관과란을 삭제하고, 같은 별표 부서명란 중 "안전정보과"를 "안전총괄과"로 하고, 안전총괄과(종전의 안전정보과) 분장사무란 중제47호부터 제57호까지, 제65호부터 제6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란에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총괄에 관한 사항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주민소통담당관"를 "주민소통과"로, "안전정보과"를 "안 전총괄과, 미디어정보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회복지과"를 "노인장 애인과"로, "도서관과"를 "구립도서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관광해 양개발과"를 "관광진흥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구의회 지출원란 중 "의사업무담당"을 "지출업무담당"으로 하고, 별표 2의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란 중 "문화예술회관"을 "사업소"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문화예술회관"을 "사업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 "문화예술회관"을 각각 "사업소"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문화예술회관"을 각각 "사업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예술회관"을 "사업소"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의사업무담당주사"를 "물품관리담당주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예술회관"을 각각 "사업소"로, "관리업무담당주사"를 "물품 관리담당주사"로 한다. [별표 2]

사업소별 부서별 사무분장표(제9조 관련)

사업소명	분 장 사 무
문화예술회관	1.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문화예술회관 청사 및 설립의 유지관리
	3. 문화예술회관 재산 및 물품 관리
	4. 문화예술회관 공연 및 전시의 기획ㆍ 조정
	5. 문화예술회관 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아카데미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립도서관	1. 구립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5. 구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8. 작은도서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9.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리 프로그램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통합 도서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13. 구립도서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4. 구립도서관 사서도우미 양성에 관한 사항
	15. 구립도서관 자료의 선정 및 수서에 관한 사항
	16. 구립도서관 자료의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
	17. 구립도서관 자료의 관리 및 장서점검에 관한 사항
	18. 구립도서관 자료의 제적에 관한 사항
	19. 구립도서관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20. 구립도서관 부속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1. 구립도서관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22. 도서관 통계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3. 참고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24. 도서관 대외 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25. 도서관주간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26. 독서의 달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27. 주민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8. 북스타트데이 운영에 관한 사항
	29. 독서 동아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0. 도서관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획조정실) 실장은 지방서기	제3조(기획조정실)
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담당관・	
<u>주민소통담당관</u> · 경제일자리담당	미디어정보담당관
관・회계담당관・징수담당관・부	
과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행정지원국) 국장은 지방서기	제4조(행정지원국)
관으로 보하고, <u>총무과장·문화체</u>	<u>총무과장 • 주민소통</u>
육과장·교육청소년과장·관광진흥	<u>과장·문화체육과장·교육청소년과</u>
<u>과장·도서관과장</u> 은 지방행정사무	<u> 장·관광진흥과장</u>
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시설	
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안전건설국) 국장은 지방기술	제6조(안전건설국)
서기관으로 보하고, <u>안전정보과장</u>	<u>안전총괄과장</u>
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설과장	
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과장	
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	
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	
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으로, 교통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축주택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으로 보한다.	
제7조(담당관・과의 사무분장) 구	제7조(담당관・과의 사무분장)
본청에 두는 담당관 • 과의 사무분	
장은 <u>별표</u> 와 같다.	<u>별표 1과</u>
제4장 문화예술회관	제4장 <u>사업소</u>

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9조(관장) ① 문화예술회관장은	제9조(관장) ① 문화예술회관장・구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립도서관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예술회관장은 다음 사항을	③ <u>각 사업소의 사무분장은 별표</u>
<u>분장한다.</u>	<u> 2</u> 와 같다.
1.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문화예술회관 청사 및 설립의	
유지관리	
3. 문화예술회관 재산 및 물품 관리	
4. 문화예술회관 공연 및 전시의	
<u>기획·조정</u>	
5. 문화예술회관 시설 대관에 관한	
<u>사항</u>	
6. 문화예술아카데미 기획 및 운영	

공

신 · 구 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별표 1]	
구 본청 실·과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u>구</u>	본청 부서별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기획예산담당관	1. ~ 33. (생 략)	기획예산담당관	1. ~ 33. (현행과 같음)
	34. 홍보 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4. <삭 제>
	35. 주요 역점시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35. <삭 제>
	36. 구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사항		36. <삭 제>
	37. 인터넷 신문(북구 전자신문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7. <삭 제>
	38. 객원기자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8. <삭 제>
	39. 소셜미디어(SNS)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9. <삭 제>
	40. 구정 홍보시설물(구정게시판,구 청사 홍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		40. <삭 제>
	<u>으는 제공</u> 41. 구정 현황소개(동영상·화보 제작)에 관한 사항		41. <삭 제>
	42. 고시, 공고 등 공보게재에 관한 사항		42. <삭 제>
	43. ~ 75. (생 략)		43. ~ 75. (현행과 같음)
	76. 잡지 등 정기간행물 등록・신고에 관한 사항		76. <삭 제>
	77. ~ 78. (생 략)		77. ~ 78. (현행과 같음)
	79. 구 상징물 관리(캐릭터 활성화 사업 포함)에 관한 사항		79. <삭 제>
	80. ~ 85. (생 략)		80. ~ 85. (현행과 같음)

보

현 행		개 정 안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u>주민소통담당관</u>	1. 집단민원 해소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1. <삭 제>
	2. 진정ㆍ건의ㆍ고충 민원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삭 제>
	3. 인터넷 민원접수 처리(국민신문고, 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포함)		3. <삭 제>
	4.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_		4. <삭 제>
	5.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사항_		5. <삭 제>
	6.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_		6. <삭 제>
	7. 구청장 동 방문 및 간담회 개최에 관한 사항		<u>7. <삭 제></u>
	8. 명절 연휴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8. <삭 제>
	9.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관한 사항		9. <삭 제>
	10. 친절배가 운동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10. <삭 제>
	11. 기관단체협의회에 관한 사항		11. <삭 제>
	12. 주민 조례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12. <삭 제>
	13.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 및 피해신고서 접수와 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13. <삭 제>
	14. 민주화 운동 관련자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14. <삭 제>
	15. 6.25전쟁 납북피해신고에 관한 사항		15. <삭 제>
	16. 행정사 업무에 관한 사항		16. <삭 제>
	17.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17. <삭 제>
	18. 동주민센터ㆍ동 행정복지센터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18. <삭 제>

제	1316 호	공	보	
		rii		ון ייי וו
		현 행 		개 정 안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부 서 명	분 정
		19. 통・반 조직운영 및 민간인 표창에 관한 사항		19 <삭 제>
		20. 동 예산 운영 및 동 행정 업무 종합조정(동시달 문서통제 등)에 관한 사항		20. <삭 제>
		21. 적십자 회비 모금에 관한 사항		21. <삭 제>
		22.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22. <삭 제>
		23. 주민만남의 날 행사운영에 관한 사항		23. <삭 제>
		25. 주민참여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24. <삭 제>
		26. 주민참여리더 발굴, 육성, 교육에 관한 사항		26. <삭 제>
		27.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7. <삭 제>
		28. 주민자치위원회 운영ㆍ지도에 관한 사항		28. <삭 제>
		29.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해당 동주민센터)		29. <삭 제>
		30. 각종 여론 및 동향 관리		30. <삭 제>
		31. 시민단체 신설,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1. <삭 제>

32.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33. 바르게살기운동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34.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에 관한 사항

37. 타 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35. 한국자유총연맹에 관한 사항

36.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서 명	분 장 사 무
	19 <삭 제>
	20. <삭 제>
	21. <삭 제>
	22. <삭 제>
	23. <삭 제>
	24. <삭 제>
	26. <삭 제>
	27. <삭 제>
	28. <삭 제>
	29. <삭 제>
	30. <삭 제>
	31. <삭 제>
	32. <삭 제>
	33. <삭 제>
	34. <삭 제>
	35. <삭 제>
	36. <삭 제>
	37. <삭 제>

공

혀	ਨ੍ਹੋ

부 서 명	분 장 사 무		
	38. 북한 이탈주민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39. 생활민원 차리(「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만원 차리에 관한 조례」 관련 업무)		
	40. 생활불편 스마트신고 민원에 관한 사항		
	4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2. 감사 및 그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43. 비위공무원 징계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44. 청원 진정서 처리에 관한 사항_		
	45. 민원서류 처리 점검에 관한 사항_		
	46. 감사사항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_		
	47. 공직기강 쇄신 추진에 관한 사항_		
	48.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_		
	49. 클린신고센터 운영		
	50.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_		
	51.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_		
	52. 중요정보 및 민원사항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53. 상급기관 이첩사항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54.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의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u>55. 주민자치회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u>		

부 서 명	분 장 사 무
	38. <삭 제>
	39. <삭 제>
	40. <삭 제>
	41. <삭 제>
	42. <삭 제>
	43. <삭 제>
	44. <삭 제>
	45. <삭 제>
	46. <삭 제>
	47. <삭 제>
	48. <삭 제>
	49. <삭 제>

50. <삭 제>

51. <삭 제>

52. <삭 제>

53. <삭 제>

54. <삭 제>

55. <삭 제>

개 정 안

공

현 행		개 정 안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56.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56. <삭 제>	
	57. 자치분권에 관한 사항		57. <삭 제>	
<u>도서관과</u>	1. 구립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 <삭 제>	
	2. 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 제>	
	3.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u>. <삭 제></u>	
	4. 독서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삭 제>	
	5. 구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삭 제>	
	6.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삭 제>	
	7.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u>7. <삭 제></u>	
	8. 작은도서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8. <삭 제>	
	9.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에 관한 사항		9. <삭 제>	
	10. 도서관리 프로그램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0. <삭 제>	
	11.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11. <삭 제>	
	<u>관한 사항</u> 12. 통합 도서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12. <삭 제>	
	13. 구립도서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3. <삭 제>	
	14. 구립도서관 사서도우미 양성에 관한 사항		<u>14. <삭 제></u>	
	15. 구립도서관 자료의 선정 및 수서에 관한 사항		15. <삭 제>	
	16. 구립도서관 자료의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		16. <삭 제>	

보

공

현 행		개 정 안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17. 구립도서관 자료의 관리 및 장서점검에 관한 사항		17. <삭 제>
	18. 구립도서관 자료의 제적에 관한 사항		18. <삭 제>
	19. 구립도서관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19. <삭 제>
	20. 구립도서관 부속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0. <삭 제>
	21. 구립도서관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21. <삭 제>
	22. 도서관 통계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2. <삭 제>
	23. 참고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23. <삭 제>
	24. 도서관 대외 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24. <삭 제>
	25. 도서관주간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25. <삭 제>
	26. 독서의 달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26. <삭 제>
	27. 주민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7. <삭 제>
	28. 북스타트데이 운영에 관한 사항		28. <삭 제>
	29. 독서 동아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9. <삭 제>
	30. 도서관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0. <삭 제>
<u>안전정보과</u>	1. ~ 35. (생 략)	<u>안전총괄과</u>	1. ~ 35. (현행과 같음)
	36. 행정 정보화사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36. <삭 제>
	37. 지역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7. <삭 제>
	38. 정보화 대상 업무 발굴 및 전산 개발에 관한 사항		38.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39. 정보화사업 협의 조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39. <삭 제>
	40.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40. <삭 제>
	41.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1. <삭 제>
	42. 온나라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2. <삭 제>
	43.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3. <삭 제>
	44. 행정정보시스템 도입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4. <삭 제>
	45. 전산실 및 전산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45. <삭 제>
	46.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S/W 보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6. <삭 제>
	48. 전산보안장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8. <삭 제>
	49. 방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9. <삭 제>
	50. 구내 정보통신망(LAN, WAN)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0. <삭 제>
	51. 통신에 대한 종합계획ㆍ수립에 관한 사항		51. <삭 제>
	52. 팩시밀리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2. <삭 제>
	53. 행정통신시설 운영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3. <삭 제>
	54. 통신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54. <삭 제>
	56. 각종 통신회선(행정통신·전화회선 등)의 통합 관리에 관한 사항		56. <삭 제>
	57. 구 본청 및 산하기관의 통신개발 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57. <삭 제>
	58. ~ 64. (생 략)		58. ~ 6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65.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에 관한 사항		65. <삭 제>
	66.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66. <삭 제>
	67. 공공시설 통신분야 공사감독		67. <삭 제>
	68. ~ 71. (생 략)		68. ~ 71. (현행과 같음)
	<신 설>		72. 중대재해처벌법 총괄에 관한 사항
<u><신 설></u>		[별표 2]	
		사업소별 부서별 사무분장표 (제9조 관련)	
		사업소명	분 장 사 무
		문화예술회관	1.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문화예술회관 청사 및 설립의 유지관리
			3. 문화예술회관 재산 및 물품 관리
			4. 문화예술회관 공연 및 전시의 기획・ 조정
			5. 문화예술회관 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아카데미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립도서관	1. 구립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부 서 명	분 장 사 무	
		5. 구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8. 작은도서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9.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리 프로그램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통합 도서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13. 구립도서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4. 구립도서관 사서도우미 양성에 관한 사항	
		15. 구립도서관 자료의 선정 및 수서에 관한 사항	
		16. 구립도서관 자료의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	
		17. 구립도서관 자료의 관리 및 장서점검에 관한 사항	
		18. 구립도서관 자료의 제적에 관한 사항	
		19. 구립도서관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20. 구립도서관 부속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1. 구립도서관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22. 도서관 통계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_		보

현 행	개 정 안	
	부 서 명	분 장 사 무
		23. 참고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24. 도서관 대외 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25. 도서관주간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26. 독서의 달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27. 주민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8. 북스타트데이 운영에 관한 사항
		29. 독서 동아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0. 도서관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 ·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 은 별표 3과 같다.
 -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 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4조(시·군·구의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 군·구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 등 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2조(실·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본청의 실·국장 및 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인 문화예술회관 관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417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사업소 신설, 주민 안전, 뉴 미디어를 통한 주민 소통 강화등 행정수요에 따른 효율적·탄력적 정원 운영
-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증17명(679명 → 696명)

나. 기관별 정원 조정

1) 본청 : 감13명(485명 → 472명)

2) 의회사무과 : 증3명(15명 → 18명)

3) 사업소 : 증27명(9명 → 36명)

다. 직급ㆍ직렬별 정원 조정

1) 5급 : 증1명

○ 사업소 : 증1명(행정 증1)

2) 6급 : 증1명

○ 본청 : 감4명(행정 감4, 행정·사서 감1, 시설 증1)

○ 의회사무과 : 증1명(행정 증1)

○ 사업소 : 증4명(행정 증1, 행정·사서 증3)

3) 7급 : 증5명

○ 본청 : 감4명(행정 감1, 행정·사회복지 증1, 행정·사서 감1,

사서 감3)

○ 의회사무과 : 증2명(행정 증2)

○ 사업소 : 증7명(행정 증1, 행정·사서 증3, 사서 증3)

4) 8급 : 증7명

○ 본청 : 감2명(행정 증1, 행정·사회복지 증2, 행정·사서 감3,

행정ㆍ시설 증1, 행정ㆍ운전 증1, 전산 감1, 사서 감3,

공업 감1, 시설·전산 증1, 시설·해양수산 증1, 운전 감1)

○ 사업소 : 증9명(행정·사서 증3, 전산 증1, 사서 증3,

사서·공업 증1, 공업 증1)

5) 9급 : 증3명

○ 본청 : 감3명(행정·사서 감1, 행정·농업 증1, 사서 감4,

공업 증1)

○ 사업소 : 증6명(행정 증1, 행정·사서 증1, 사서 증4)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

4. 개정규칙안 및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라. 제 출 처
 -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
 - 2) 전화번호 : 052)241-7102, 팩스번호 : 052)241-7109
 - 3) 전자우편(E-mail) : ginger@korea.kr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2021. 11. 11.(목요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합계	<u>696</u>	<u>472</u>	<u>18</u>	49	<u>36</u>	121(4)
합	계	정무직	1	1				
		일반직	<u>694</u>	<u>470</u>	<u>18</u>	49	<u>36</u>	121(4)
		별정직	1	1				
정무	구직	구 청 장	1	1				
		계	<u>694</u>	<u>470</u>	<u>18</u>	49	<u>36</u>	121(4)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일	4급	소계	5	4		1		
		서기관	3	3				
		기술서기관	2	1		1		
	5급	소계	<u>41</u>	24	3	4	2	8
반		행정	<u>26</u>	15	3		2	6
		행정/사회복지	3	2				1
		행정/농업/ 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녹지	1	1				
직		행정/보건/ 간호/의료기술	2			2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시설	1	1				
		의무	2			2		
		시설	3	3				
		농업/해양수산	1	1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6급	소계	<u>142</u>	<u>106</u>	4	10	<u>6</u>	16
		행정	<u>63</u>	<u>49</u>	4	1	1	8
반		행정/세무	6	6				
		행정/사회복지	11	3				8
직		행정/사서	<u>3</u>	0			<u>3</u>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녹지	2	2				
		행정/의료기술/간호	1			1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6	6				
		행정/공업	4	2			2	
		세무	3	3				
		전산	1	1				
		사회복지	3	3				
		공업	1	1				
		농업	2	2				
		녹지	1	1				
		수의/의무/약무/간호	1			1		
		해양수산	1	1				
		보건	2	2				
		보건진료	1			1		
		공업/환경	1	1				
		시설	<u>15</u>	<u>15</u>				
		방송통신	2	2				
		운전	2	2				
		보건/의료기술/간호	6			6		

공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7급	소계	<u>218</u>	<u>160</u>	<u>6</u>	15	<u>10</u>	27
		행정	<u>91</u>	<u>65</u>	<u>5</u>	1	<u>4</u>	16
반		행정/세무	2	2				
		행정/사회복지	<u>8</u>	<u>5</u>				3
직		행정/사서	<u>3</u>	<u>0</u>			<u>3</u>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7	7				
		행정/학예연구	1	1				
		세무	8	8				
		전산	2	2				
		사회복지	14	7				7
		사서	<u>3</u>	<u>0</u>			<u>3</u>	
		속기	1		1			
		공업	4	4				
		공업/환경	1	1				
		농업	3	3				
		농업/수의/해양수산	1	1				
		녹지	4	4				
		수의	1	1				
		수의/약무/간호	1			1		
		해양수산	1	1				
		시설/해양수산	1	1				
		보건	5	4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의료기술	2			2		
		간호	5			5		
		보건진료	1			1		
		환경	3	3				
		시설	28	28				
		시설/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4	4				
		운전	3	3				
		전기운영	1	1				
		농림운영	1	1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뇽
일	8급	소계	<u>208</u>	<u>124</u>	3	17	<u>12</u>	52
		행정	<u>73</u>	<u>41</u>	2			30
반		행정/세무	2	2				
		행정/전산	1	1				
직		행정/사회복지	<u>11</u>	9				2
		행정/사서	<u>3</u>	<u>0</u>			<u>3</u>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2	1				1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2	2				
		행정/환경/공업	1	1				
		행정/시설	8	8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운전	1	1				
		세무	7	7				
		전산	<u>3</u>	2			1	
		사회복지	17	6				11
		사서	3	<u>0</u>			<u>3</u>	
		사서/공업	1				1	
		공업	5	1		1	<u>3</u>	
		공업/환경	2	2				
		농업/해양수산	1	1				
		녹지	2	2				
		녹지/시설	1	1				
		해양수산	2	2				
		농업	1	1				
		보건	6	2		4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의료기술	4			4		
		간호	13			5		8
		시설	20	20				
		시설/전산	<u>1</u>	<u>1</u>				
		시설/해양수산	<u>1</u>	<u>1</u>				
		방송통신	2	1			1	
		운전	<u>6</u>	<u>5</u>		1		
		방재안전	1	1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9급	소계	<u>79</u>	<u>51</u>	2	2	<u>6</u>	18(4)
		행정	<u>33</u>	20			1	12(4)
반		행정/세무	2	2				
		행정/사회복지	4					4
직		행정/사서	1	0			1	
		행정/녹지	1	1				
		행정/농업	1	1				
		세무	2	2				
		사회복지	9	7				2
		사서	4	0			<u>4</u>	
		속기	1		1			
		공업	<u>3</u>	<u>3</u>				
		공업/환경	2	2				
		녹지	2	2				
		녹지/시설	1	1				
		보건	3	3				
		보건/의료기술	1			1		
		시설	6	6				
		방송통신	1	1				
		운전	2		1	1		
별		계	1	1				
정	6급	소계	1	1				
직	상당	비서	1	1				

※ 괄호()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임.

신・구 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里王]	10 11 10 11A	->	-1 -1		1 41		1-1	[별丑		93 95 Jan 5		-1 -1				1-1
울산광역	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급 T	· 직렬	별 7 의	5 원표 	(제22 	조 관련) 	<u>물</u>	<u>ૄ</u>	격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급 T	• 즥렬	별 7 의	원표	.(제22 	전 관련
직 급 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기회 사 무 과	직 속 기 관	사 업 소	동	직 종 별	급	직렬별	총 계	본 청	기회 사 무 과	직 속 기 관	사 업 소	동
	합계	<u>679</u>	<u>485</u>	<u>15</u>	49	9	121(4)			합계	<u>696</u>	<u>472</u>	<u>18</u>	49	<u>36</u>	121(4
합계	정무직	1	1					ğ	계	정무직	1	1				
	일반직	<u>677</u>	<u>483</u>	<u>15</u>	49	9	121(4)			일반직	694	<u>470</u>	<u>18</u>	49	<u>36</u>	121(4)
	별정직	1	1							별정직	1	1				
정무직	구 청 장	1	1					정·	무직	구 청 장	1	1				
	계	<u>677</u>	<u>483</u>	<u>15</u>	49	9	121(4)			계	694	<u>470</u>	<u>18</u>	49	<u>36</u>	121(4
3급	소계	1	1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부이사관	1	1				
일 4급	소계	5	4		1			일	4급	소계	5	4		1		
	서기관	3	3							서기관	3	3				
	기술서기관	2	1		1					기술서기관	2	1		1		
5급	소계	<u>40</u>	24	3	4	1	8		5급	소계	<u>41</u>	24	3	4	2	8
반	행정	<u>25</u>	15	3		1	6	빈		행정	<u>26</u>	15	3		2	6
	행정/사회복지	3	2				1			행정/사회복지	3	2				1
	행정/농업/ 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농업/ 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녹지	1	1							행정/녹지	1	1				
직	행정/보건/ 간호/의료기술	2			2			직		행정/보건/ 간호/의료기술	2			2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시설	1	1							행정/시설	1	1				
	의무	2			2					의무	2			2		
	시설	3	3							시설	3	3				
	농업/해양수산	1	1							농업/해양수산	1	1				

공

		현 		행								개 ?	성	안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 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 속 기 관	사 업 소	동	Z 30 H		직급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 속 기 관	사 업 소	동
일	6급	소계	<u>141</u>	<u>110</u>	3	10	2	16	Õ	j	6급	소계	<u>142</u>	<u>106</u>	4	10	<u>6</u>	16
		행정	<u>65</u>	<u>53</u>	<u>3</u>	1		8				행정	<u>63</u>	<u>49</u>	<u>4</u>	1	<u>1</u>	8
반		행정/세무	6	6					뉟	<u>}</u>		행정/세무	6	6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사회복지	3	3				
직		행정/사서	1	1					2	1		행정/사서	<u>3</u>	<u>0</u>			<u>3</u>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녹지	2	2								행정/녹지	2	2				
		행정/의료기술/간호	1			1						행정/의료기술/간호	1			1		
		행정/환경	2	2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6	6								행정/시설	6	6				
		행정/공업	4	2			2					행정/공업	4	2			2	
		세무	3	3								세무	3	3				
		전산	1	1								전산	1	1				
		사회복지	11	3				8				사회복지	11	3				8
		공업	1	1							•	공업	1	1				
		농업	2	2								농업	2	2				
		녹지	1	1								녹지	1	1				
		수의/의무/약무/간호	1			1						수의/의무/약무/간호	1			1		
		해양수산	1	1								해양수산	1	1				
		보건	2	2								보건	2	2				
		보건진료	1			1						보건진료	1			1		
		공업/환경	1	1								공업/환경	1	1				
		시설	<u>14</u>	<u>14</u>								시설	<u>15</u>	<u>15</u>				
		방송통신	2	2								방송통신	2	2				
		운전	2	2								운전	2	2				
		보건/의료기술/간호	6			6						보건/의료기술/간호	6			6		

공

		현		행							개기	정	안				
직 종 별	직 급 별	직렬별	총 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 속 기 관	사 업 소	동	직 종 별	직 급 별	직렬별	총 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 속 기 관	사 업 소	동
일	7급	소계	<u>213</u>	<u>164</u>	4	15	3	27	일	7급	소계	<u>218</u>	<u>160</u>	<u>6</u>	15	<u>10</u>	27
		행정	<u>89</u>	<u>66</u>	3	1	3	16			행정	<u>91</u>	<u>65</u>	<u>5</u>	1	4	16
반		행정/세무	2	2					반		행정/세무	2	2				
		행정/사회복지	<u>7</u>	4				3			행정/사회복지	8	<u>5</u>				3
직		행정/사서	1	1					직		행정/사서	<u>3</u>	0			3	
		행정/농업	1					1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1	1							행정/녹지	1	1				
		행정/환경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7	7							행정/시설	7	7				
		행정/학예연구	1	1							행정/학예연구	1	1				
		세무	8	8							세무	8	8				
		전산	2	2							전산	2	2				
		사회복지	14	7				7			사회복지	14	7				7
		사서	3	3							사서	3	<u>0</u>			<u>3</u>	
		속기	1		1						속기	1		1			
		공업	4	4						•	공업	4	4				
		공업/환경	1	1							공업/환경	1	1				
		농업	3	3							농업	3	3				
		농업/수의/해양수산	1	1							농업/수의/해양수산	1	1				
		녹지	4	4							녹지	4	4				
		수의	1	1							수의	1	1				
		수의/약무/간호	1			1					수의/약무/간호	1			1		
		해양수산	1	1							해양수산	1	1				
		시설/해양수산	1	1							시설/해양수산	1	1				
		보건	5	4		1					보건	5	4		1		
		보건/약무	1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1			1					보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의료기술	2			2					의료기술	2			2		
		간호	5			5					간호	5			5		
		보건진료	1			1				-	보건진료	1			1		
		환경	3	3						-	환경	3	3				
		시설	28	28							시설	28	28				
		시설/방재안전	1	1							시설/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4	4							방송통신	4	4				
		운전	3	3							운전	3	3				
		전기운영	1	1							전기운영	1	1				
		농림운영	1	1							농림운영	1	1				

		현		행							개기	정	안				
직 종 별	직 급 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 무 과	직 속 기 관	사 업 소	동	직 종 별	직 급 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 무 과	직 속 기 관	사 업 소	동
일	8급	소계	<u>201</u>	<u>126</u>	3	17	<u>3</u>	52	일	8급	소계	<u>208</u>	124	3	17	<u>12</u>	52
		행정	<u>72</u>	<u>40</u>	2			30			행정	<u>73</u>	<u>41</u>	2			30
반		행정/세무	2	2					반		행정/세무	2	2				
		행정/전산	1	1							행정/전산	1	1				
직		행정/사회복지	9	<u>7</u>				2	직		행정/사회복지	<u>11</u>	9				2
		행정/사서	3	3							행정/사서	3	0			<u>3</u>	
		행정/공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2	1				1			행정/농업	2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2	2							행정/환경	2	2				
		행정/환경/공업	1	1							행정/환경/공업	1	1				
		행정/시설	7	7							행정/시설	<u>8</u>	8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방송통신	1		1			
			< 신	설>	<u>-</u>			•			행정/운전	1	1				
		세무	7	7							세무	7	7				
		전산	3	<u>3</u>							전산	3	2			1	
		사회복지	17	6				11			사회복지	17	6				11
		사서	3	<u>3</u>							사서	3	<u>0</u>			<u>3</u>	
			< 신	설>	>						사서/공업	1				1	
		공업	5	2		1	2				공업	5	1		1	<u>3</u>	
		공업/환경	2	2							공업/환경	2	2				
		농업/해양수산	1	1							농업/해양수산	1	1				
		녹지	2	2							녹지	2	2				
		녹지/시설	1	1							녹지/시설	1	1				
		해양수산	2	2							해양수산	2	2				
		농업	1	1							농업	1	1				
		보건	6	2		4					보건	6	2		4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의료기술	4			4					의료기술	4			4		
		간호	13			5		8			간호	13			5		8
		시설	20	20							시설	20	20				
			< 신	설>	 						시설/전산	1	1				
			< 신	설>	<u> </u>						시설/해양수산	1	1				
		방송통신	2	1			1				방송통신	2	1			1	
		운전	7	6		1					운전	<u>6</u>	<u>5</u>		1		
		방재안전	1	1							방재안전	1	1				

		현	ð	챙							개경	성	안				
	직 급 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 무 과	직 속 기 관	사 업 소	동	직 종 별	직 급 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 무 과	직 속 기 관	사 업 소	동
일 9	9급	소계	<u>76</u>	<u>54</u>	2	2	0	18(4)	일	9급	소계	<u>79</u>	<u>51</u>	2	2	<u>6</u>	18(4)
		행정	<u>32</u>	20				12(4)			행정	33	20			1	12(4)
반		행정/세무	2	2					반		행정/세무	2	2				
		행정/사회복지	4					4			행정/사회복지	4					4
직		행정/사서	1	1					직		행정/사서	1	<u>0</u>			1	
		행정/녹지	1	1							행정/녹지	1	1				
		<u><</u>	< 신	설>	<u> </u>						행정/농업	1	1				
		세무	2	2							세무	2	2				
		사회복지	9	7				2			사회복지	9	7				2
		사서	4	4							사서	4	<u>0</u>			<u>4</u>	
		속기	1		1						속기	1		1			
		공업	2	2							공업	3	<u>3</u>				
		공업/환경	2	2							공업/환경	2	2				
		녹지	2	2							녹지	2	2				
		녹지/시설	1	1							녹지/시설	1	1				
		보건	3	3							보건	3	3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의료기술	1			1		
		시설	6	6							시설	6	6				
		방송통신	1	1							방송통신	1	1				
		운전	2		1	1					운전	2		1	1		
별		계	1	1					별		계	1	1				
정 6	6급	소계	1	1					정	6급	소계	1	1				
직 성	상당	비서	1	1					직	상당	비서	1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2. 삭제
-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 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관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

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1. 11. 11.(목요일)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423호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보

공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20조(2022. 1. 13. 시행)에서 주민에게 규칙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제2조)
- 나. 의견제출 제외 대상(안 제4조)
- 다. 의견제출 방법(안 제5조)
- 라. 의견제출 검토(안 제7조)
- 마. 의견 반영(안 제8조)
-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0조, 제29조
-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라. 제 출 처
 -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
 - 2) 전화번호 : 052)241-7131, 팩스번호 : 052)241-7109
 - 3) 전자우편(E-mail) : ryusm77@korea.kr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울산광역시 토	부구 규칙의 제정과 가 관한 조례 ⁹		의견 제출 등에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의선세물자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	출 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구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보

-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서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규칙의 주관부서(해당 규칙을 제정·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에 대하여 법제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검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 검토결과서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송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8조(의견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제9조(차별대우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 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나 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١	「増ス	l ai	1	ㅎ	서	싀]
	P / `	ויי ו	ıΤ	<u> </u>	′ ' I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서

	11 7 7	MI 6 7	1 7110	-11 **1	7 L''I			
	성명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		인 경우	√ 표人
의견제출인	주소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전화번호							
	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해당	[] 해당	당되지 않음		대표자 인원	: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저 제5조제1항에 따리				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 등에	관한 조	 례」
					Ę	<u> </u>	월	일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 인)
울산광역시 북	구청장 귀하							
				210mm×	:297mm[백상지 80g	J/m² 또는	중질지 8	30g/ m²

[별지 제2호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서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제출일자
제출의견	
주관부서 및 검토자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규칙명	(현행 규칙이 있을 경우 기재)
관련 법령 및 조례	
검토의견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수용여부/사유 등 작성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u>규칙</u>(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u>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u>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430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구민 다양한 학습욕구 충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학습을 통한 주민 과 도시의 성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평생학습대학 및 학습이력 등을 신설 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평생학습대학의 정의
- 나. 평생학습대학 입학대상의 변경
- 다. 평생학습대학의 정원 · 입학 · 졸업 등
- 라. 기존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3. 관계법령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교육청소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라. 제출처

1)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24, 북구청 교육청소년과

2) 전화번호 : 052)241-7393, 팩스번호 : 052)241-7399

3) 전자우편(E-mail) : bukgujung@korea.kr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공

[붙임]

의 견 제 출 서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졸계 개정안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 성명/단체명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 성명/단체명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결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 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2. "평생학습"이란 구민이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전 생애에 걸쳐 행하는 모든 형태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활동을 말한 다.
- 3. "평생학습대학"이란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기관을 말한다.
- 4. "학습이력"이란 평생학습대학을 비롯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구민의다양한 학습경험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평생교육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독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속하는 기관·단체·사업 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 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기관의 운영과 평생교육 프로 그램의 개발 및 구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이용자, 평생교육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경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 제5조(설치)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 역할 을 수행한다.
 -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평생학습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평생교육에 대하여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다.
 -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 2. 평생교육 전문가
 - 3.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 5. 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의장 등의 임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다.
 -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11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2조(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시설간의 협력 증진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

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 제13조(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한다.
 -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교육경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평생교육 정책개발과 연구에 관한 사항
-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3.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4.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시설의 연계 및 지원
- 5.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 6. 평생교육 관련 실무자에 대한 교육과 연수
- 7. 자율적인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 8. 문자해득교육의 지원
- 9.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5조(강사)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운영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자격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촉하거나 초빙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학습비 등의 징수)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이 관리·운영하는 평생교육 과정의 이용자 또는 시설의 사용자에게 별표1에 따라 학습비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 ② 학습비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③ 학습비 또는 사용료의 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7조(학습비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비를 감면할 수 있다.
 - 1. 100분의 80 감면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 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와 유족
 - 2. 100분의 50 감면 :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자
 - 3. 100분의 20 감면
 - 가.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최근 3년간 자원봉사증 발급에 충족하는 자원봉사를 한 경우)
 - 나. 다자녀 사랑카드를 소지한 다자녀 가구원
 -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2. 국가 또는 구가 후원하는 비영리 행사
 - 3.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8조(학습비 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시설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전액 반환

-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나.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되었을 경우
- 다. 사용 예정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2. 일부 반환 : 시설 사용 중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을 취소한 경우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
- ② 제1항제2호와 제2항제2호의 경우 카드결제로 납부한 학습비와 사용료는 카드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후 반환할 수 있다.
- 제19조(이용제한)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1. 이 조례 또는 이 규칙에 의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학습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평생학습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제20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 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와 급량비의 실 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평생학습대학

- 제21조(교육목표) 평생학습대학은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 배움이 나눔으로 실천되는 학습공동체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2조(계획수립) 학장은 매년 평생학습대학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평생학습대학 운영·관리의 기본방향
 - 2. 평생학습대학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지원 계획
 - 3. 거점캠퍼스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수업료의 징수현황과 결산에 관한 사항

- 5.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 6. 그 밖의 학사관리 등 필요로 하는 사항
- 제23조(운영 등) ① 평생학습대학은 학장을 두며 학장은 구청장이 된다. 학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대학을 대표한다.
 - ② 학장은 평생학습대학의 학사관리를 위하여 교학실장, 교육행정담당자를 두며. 교학실장은 평생교육업무 부서장이 된다.
- 제24조(운영위원회) ① 평생학습대학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1. 운영위원회 세부운영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2. 입학·졸업에 관한 중요 사항
 - 3. 학생지도·장학·후생·포상·징계에 관한 사항
 - 4.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평생학습대학 운영에 필요하여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운영위원회는 제5조의 협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25조(교수 등) ① 학장은 평생학습대학의 교육과정별 교수를 둘 수 있다.
 - ② 교수는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장이 위촉한다. 다만, 교수자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제3항에 따라 위촉한 교수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6조(학기 등) ① 평생학습대학은 학기제로 운영하며, 주1회 수업으로 최소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운영한다. 다만, 수업에 필요한 시간은 교육과정의 내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 ② 평생학습대학의 수업료는 별표2와 같으며, 수업료의 반환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학사관련 운영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 제27조(정원) 평생학습대학의 정원은 학과별 40명이며, 증원 또는 감원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
- 제28조(입학 및 졸업) ① 입학자격은 평생교육 희망자 중 수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자로 한다.
 - ② 입학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1.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다만, 구 거주자의 경우 우선권을 가진다.)
 - 2. 그 밖의 지역 거주자
 - ③ 졸업은 출석해야 할 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 ④ 학장은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29조(학생자치활동) 평생학습대학에는 학생자치기구로 학생회를 둘 수 있으며 학생은 동아리를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다.
- 제30조(사회공헌활동) ① 학장은 평생학습대학 학생이 학습을 통하여 축적한 지식과 재능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제공하는 사회공헌활동에 대 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사회공헌활동 참가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
- 제31조(대학간 학술교류) 학장은 국내·외 대학과의 공동연구, 학술정보교환, 교수추천 등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학습결과의 관리・인정

제32조(학습결과) ① 구청장은 구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학습대학 등의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의 지속적인 학습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학습결과를 관리할 수 있다.

- ② 구민의 학습결과는 학습봉사와 학습이력으로 나누어 활용한다.
- 제33조(학습이력)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이용자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관리하여 체계적인 학습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습이력을 관리한다.
 - ② 평생교육 이용자의 학습이력은 평생교육 업무부서에서 관리한다.
 - ③ 학습이력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34조(학습봉사) ① 학습봉사는 평생학습대학 및 구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보조를 말하며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학습봉사자에 대하여 제20조에 준용하여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 제35조(유공표창) 구청장은 평생교육 참여를 통하여 사회공헌활동 등에 참여하는 등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36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평생교육사업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학습비 등 징수기준(제16조제1항 관련)

1. 학습비

운 영 과 정	학습비	기준단위	비고
대학 등 전문기관 위탁 과정	50,000원 이하/과정	주 2회 기준	
자격증 취득 훈련과정	50,000원 이하/월	주 2회 기준	
평생교육 일반과정	30,000원 이하/월	주 2회 기준	

- 가. 1회는 1시간(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단위 초과 또는 미만 시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나. 강의와 관련한 재료비, 교재비 등은 학습자가 부담한다.
- 다.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2. 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대강당	50,000	대강당 냉·난방시설	20,000
		강의실 냉·난방시설	10,000
강의실	30,000	빔프로젝트	10,000

- 가. 시설 사용은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시간 초과 시 매 30분마다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을 가산할 수 있다.
- 나. 시설 사용시간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으로 한다.
- 다. 사용자의 부주의로 시설, 장비 파손 시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별표 2]

수업료 징수기준(제26조제2항 관련)

2. 수업료

운 영 과 정	수업료	기준단위	비고
평생학습대학	60,000원 이하/월	주 1회 기준	

- 가. 1회는 2시간(1시간 40분)을 기준으로 하며, 강의와 관련된 재료비와 전문자격 운영으로 인한 교재비 등은 학습자가 부담한다.
- 나.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 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과정 등)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 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21조(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운영
 -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2. 평생교육 상담
 -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 제공
 - 5. 제21조의3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
 - 6. 그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431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구민 다양한 학습욕구 충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학습을 통한 주민과 도시의 성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평생학습대학 및 학습이력 등을 신설하여 운영하기위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구성 및 기능
- 나. 평생학습관의 이용시간, 이용대상, 이용자의 의무
- 다. 평생학습대학의 입학 · 졸업 등의 학사관리 등
- 라. 기존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폐지
- 3.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제4조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21조
-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교육청소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라. 제출처
 - 1)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24, 북구청 교육청소년과
 - 2) 전화번호 : 052)241-7393, 팩스번호 : 052)241-7399
 - 3) 전자우편(E-mail) : bukgujung@korea.kr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0	세 관한 조려	∥ 시행규칙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귀인세골자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	출 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평생교육실무협의회

-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 1.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간의 협력 증진과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 2.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간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3.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4. 평생학습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는다.
 - ②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 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평생교육 관련 공무원
 - 2. 평생교육 기관·단체 및 시설의 운영자
 - 3.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 ④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5조(회의 등)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열 수 있다.
 - ②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평생학습관

제7조(위치) 평생학습관은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24(연암동)에 둔다.

- 제8조(운영시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 근무시간 등을 준용한다. 다만,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이용대상) 평생학습관의 시설 및 평생교육강좌의 이용 대상자는 구 관내 거주 주민을 우선으로 하며,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도 이용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자의 의무 등) ① 평생학습관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시설·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 ③ 시설물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이용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안전 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심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강사의 자격 등) ① 평생학습관 강사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와 같다.
 -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 등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평생학 습관 강좌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강사로 활동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4. 수강생의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 5. 그 밖에 강사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③ 강사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제12조(강사의 모집 등)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강사를 공개모집 또는 추천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평생교육강좌 강의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학습비의 징수 및 납입) ① 평생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2 호서식의 평생교육강좌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학습비를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교육강좌 접수대 장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 ② 강좌의 개설기간, 수강시간 및 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규모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③ 평생교육 학습비를 수납한 때에는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세외수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학습비의 반환) ①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② 학습비의 반환은 별지 제4호서식의 학습비 반환신청서에 따르고, 그 외의 절차와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15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평생학습관의 시설 등을 사용(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고,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변경)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른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평생학습관에서 사용료를 수납한 때에는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세외수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취소 및 반환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에 따르고, 반환금은 반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반환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장 평생학습대학

- 제16조(위치) 평생학습대학은 평생학습관에 본부를 두며, 관내 거점캠퍼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7조(교수 등) ① 학장은 교육과정별 교수를 둘 수 있다.
 - ② 교수는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장이 위촉한다. 다만, 교수자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한다.
 - 1. 정교수 : 박사 이상의 전공관련 학위를 가지고 5년 이상의 강의경력이 있는 자
 - 2. 부교수 : 석사 이상의 전공관련 학위를 가지고 5년 이상의 강의경력이 있는 자
 - 3. 전임강사 : 학사 이상의 전공관련 학위를 가지고 5년 이상의 강의경력 또는 현장경험이 있는 자
 - ③ 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8조(입학지원) 평생학습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1. 입학원서(별지 제8호서식) 1통
 - 2. 증명사진 2매
- 제19조(입학허가) ① 입학은 신청자 중「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라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학장이 허가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입학이 허가된 자라도 제2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20조(수업료의 납부 등) ① 학장은 매년 수업료를 결정하여 신입생 모집시 공고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수업료를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하고, 예비합격자 순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 ④ 학장은 실험·실습·그 밖의 교육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 제21조(졸업) 학장은 평생학습대학의 정규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졸업증서를 수여하고, 졸업자에 대한 우대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22조(결석처리 등) ① 학생이 8회를 연속하여 무단으로 결석할 때에는 재적으로 처리한다.
 - ② 해당 수업의 시작시간 30분경과 후 출석한 자는 지참으로 처리하며, 지참 또는 조퇴를 3회 할 때에는 1일 결석으로 처리한다.
- 제23조(공가) 학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며 결석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법령에 의하여 소집 ·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 2. 천재지변 · 교통두절 등의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 3. 행정기관 등의 협력 업무에 직접 참여하되 사전에 신고한 후 관련부서의 근거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 제24조(상벌) ① 재학생에 대한 상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② 재학 중 출석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개근한 자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③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5조(학사관리 및 관계서류 등) ① 학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석관리카드, 별지 제11호서식의 졸업자명부(학적부) 및 졸업증서 발급대장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② 학장은 학생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평생학습대학 학생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학생은 강의실 내에서 이를 패용하여야 한다.

보

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공

보

[별지 제1호서식]

평생교육강좌 강의 참여 신청서							
	성	명			생 년 월 일	년 (성별	월 일 : 남, 여)
	주	소					
신청자	연 락	처	자 택 사무실		E-mail		
	·		휴대폰				
최종	중학력			수	료 · 졸 업(전	공분야 :)
현 직/ ° 주요경력 °							
강의	교과목	○ 강의과목 : ○ 강 좌 명 :					
희망	희망 강의료 · (근거 :)						
○ 강의할 내용 ○ ※ 강의 계획서는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강의 참여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	집항목			수갑	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평생교육강좌 강의 참여에 관한 안내사항 통보 연락처, 최종학력, 경력 및 경력 조회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강좌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	 울산광역시] 북구	 ¹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	 례 시행규칙」저]12조에 따리	구 울산광역시 ·

구 평생학습관의 강의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

평생교육강좌 수강신청서						
집	占 수번호		강 좌 명			
		성 명				
		주 소				
	2.52.2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성별	: 남, 여)	
	신청인	연 락 처	자택 :	휴대폰 :		
		E-mail				
		문자서비스 수 신 여 부	□ 동의함 □	동의안함		
윈스미	100분의 80 감면	□ 국가유공자외	· 유족 [] 5·18민주유 ⁻	공자와 유족	
학습비 감 면	100분의 50 감면	□ 장기・인체조	직 등 기증자			
감 ¹ 면 (증빙서				원		
	100분의 5 감면	□ 장기・인체조	직 등 기증 희	망자 중 구민		
※ 수강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 연릭	성명, 주소, '처, 계좌번호	평생교육 강	좌 수강 안내시	항 등 통보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강좌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본인 성명: (서명)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위와 같이 「	울산광역시 북구 평	생교육 진흥에 관	한 조례 시행규	² 칙」제13조제1	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수	강 증		
접수번호 :				
강 좌 명		개강일시		
성 명		수강기간	~	(개월)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성별 : 남·여)	강의장소		
담 당 자		(전	화 :)
	년	월 일		
	울 산 광 '	역시 북구청장		

[별지 제3호서식]

평생교육강좌 접수대장(강좌)

연번	성 명	생 년 월 일	성별	주	소	연락처	비고

[별지 제4호서스

학습비 반환신청서					
	강 좌 명			(반)
수 강 생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수 강 료	금		원(₩)	
감 면 율	100분의	리 금	원(₩)	
실제납부 수 강 료	금		원(₩)	
계좌입금	거래은행		예 금 주 명		
통 장	계좌번호				
반환신청 사 유					
※ 학습비 반환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수집	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 생년월일, 계좌번호	평생학습관 학습비	반환에 관한 안내사	항 통보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강좌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본인 성명: (서명)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이이 가이 「으	사라여지 보그 :	려새고은 지호에 고	하 조례 시해규칙, 제	14マコ)つお	ما التا الم

위와 같이「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울산 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의 학습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5호서식]

제 1316 호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서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단체명			연 락 처	자 택:		
					휴 대 폰:		
	주 소						
사용도	극적(행사명)						
사 용	기본시설						
시 설	부대시설		1. 냉난방 2.	빔 프로젝터 3.	기타(,)	
사 용 기 간			년 월 년 월				
참가예	정인원			명, 학생 명, 계	(중고생) 명 <i>,</i> 명		
※ 시설 시	※ 시설 사용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수집 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성 사업자등	생년월일, 주소 목번호, 연락 <i>‡</i>	허	평생학습관 시설	설 사용(변경)에 관	한 안내사항 통보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정보주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_	l명:	(서명)		
			법정대리인 성	1명:	(서명)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허가서

 ○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 사 용 시 설 :○ 사 용 자 명 :○ 사 용 목 적 :

사 용 료	영수증번호	납부일자	비고
납부확인	제 호	년 월 일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5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별지 제7호서식]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 연락처	자 택:			
전 경 시	주 소		U 4 A	휴대폰 :			
사용일시			사용장소				
납 부 한 사 용 료	금 (₩	원)	사 용 료 납 부 일				
계좌입금	거래은행		예금주명				
통 장	계좌번호						
반환신청 사 유							
※ 시설 사용 취	소 및 사용료	반환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등의			
수집항-		수집 등	• •	·	보유기간		
성명, 주 연락처, 계:	명, 주소,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에 처, 계좌번호 관한 안내사항 통보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정보주체가 단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이동인 경우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본인 성명: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서명)			
		# 6세년 2 3 5· 	(^	1 <i>0</i> /			

위와 같이「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홍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8호서식]	
------------	--

지원학과		접수번호	

울산	광역시 5 입	부구 평/ 학	학 제 원	기)	너		자 진 cm×4cm)
	성 명		생년 월일				ent renty
	주 소						
	연 락 처	자 택		휴대폰			
지원자 인적	한탁 시	E-mail				성별	남 여
사항	최종학력				(전급	공분야 :	수료 · 졸업 :)
	주요경력	0					
	지원동기	0					
	기타사항	0					

※ 수강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e-mail,연락처, 학력, 경력	평생학습대학 강의안내 등의 학사운영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강좌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궁의임 □ 궁의약시 않는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

본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학습대학에 입학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١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학습대학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제 - 호

졸업 증 서

학과 및 학번:

성 명: 생년월일:

귀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학습대학에서 제 기 ○○○의정(. . . ~ . .)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학습대학장

[별지 제10호서식]

년 ()월 출석관리카드

학 번	성 명	()월									
기 건	78 78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별지 제11호서식]

()년도 졸업자명부(학적부) 및 졸업증서 발급대장

발급번호	학과	학번	성 명	성별	생년 월일	주 소	전화번호	비고

[별지 제12호서식]

평생학습대학 학생증

울산광역	시 북구 평생학습[내학 학생증				
	성 명					
사 진	학 과	의 보고				
	학 번	公 图 对 图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학습대학장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 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과정 등)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 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21조(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운영
 -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운영
 - 2. 평생교육 상담
 -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 5. 제21조의3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
 - 6. 그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